

『여성학연구』 간행규정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여성학연구』의 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발행)

『여성학연구』의 발간은 연 2회로 하며,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에 발간한다.

제3 조 (원고내용)

- (1) 『여성학연구』에 게재하는 원고는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 (2) 『여성학연구』에 게재하는 원고의 주제는 학문 분야별 여성/젠더 관련 현안 및 문제, 또는 성평등에 기여하는 여성/젠더관련 논문이어야 한다.
- (3) 『여성학연구』의 원고는 연구논문, 기획논문, 특집, 서평 등으로 구성된다.
 - ① 연구논문 : 이론적 분석이 깊이 있게 다루어진 논문
 - ② 기획논문 : 여성연구소 기획 하에 집필된 연구논문
 - ③ 특집 : 대담이나 좌담 등 여성연구소 기획의 결과물
 - ④ 서평 : 최근 3년간 발행된 여성주의 관련 단행본, 간행물, 논문에 대한 서평

제 4 조 (논문의 투고자격)

- (1) 연구논문 또는 기획논문은 석사 학위 이상 소유의 여성/젠더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가 투고할 수 있다.
- (2) 한 호에 투고되는 연구논문 또는 기획논문의 수는 주저자 당 하나로 제한한다. 다만 공동저자인 경우는 두 개까지 가능하다.

제 5 조 (원고투고 및 접수)

- (1) 원고는 수시로 투고할 수 있으나 3월 1일 이후에 투고된 논문은 2호, 9월 1일 이후에 투고된 논문은 다음 1호의 간행 일정에 맞추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2) 원고는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 (<https://pusanwomen.jams.or.kr>)을 통해 제출한다. 원고 파일 제출 시 투고자는 반드시 접수 여부와 원고 내용의 손상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 주 소 : (46241)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공동연구소동 715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편집위원회

- 전 화 : 051) 510-1893

- 이메일 : pusanwomen@pusan.ac.kr

- (3) 원고 투고 시 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논문투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복수의 저자가 관여한 경우에는 저자의 기여도 순서대로 이름을 제시해야 한다.
- (4) 원고내용에는 투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원고 내용에 투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 (5) 원고는 반드시 『여성학연구』 원고작성요강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여성학연구』 원고작성요강에 입각하여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6)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

제 6 조 (편집위원회)

- (1) 부산대 여성연구소에서는 『여성학연구』의 편집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한다.
-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 가운데서 여성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4) 편집위원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5)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 ① 원고접수
 - ② 심사위원 위촉
 - ③ 투고된 연구논문 및 기획논문의 심사
 - ④ 관련 규정의 제·개정
 - ⑤ 기타 『여성학연구』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중요사항
- (6)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임포함)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원고심사절차)

- (1) 원고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원고가 심사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원고작성요강에 맞지 않거나 중요한 부분이 빠져 완성된 논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혹은 『여성학연구』의 성

격에 비추어 부적절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심사대상원고의 저자명은 익명으로 하고 제목을 수합하여 편집위원회에 심사위원 선정을 회부한다.
- (3) 편집위원회는 각 원고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4)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 (5) 심사위원은 투고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제 8 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원고를 심사한다.

- (1) 연구의 독창성
- (2) 연구방법의 타당성
- (3) 전개의 논리성
- (4) 문장력
- (5)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
- (6) 젠더연구 분야에 대한 기여도
- (7) 형태사항의 적절성(원고분량, 도표, 요약 등)

제 9 조 (심사결과판정)

- (1) 심사위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하며, 심사결과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2) 각 심사의견에 따른 심사결과판정은 다음에 의한다.
 - ①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따르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계재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재심	계재 불가	심사결과
3				계재
2	1			계재
2		1		수정 후 계재
2			1	수정 후 계재
	3			수정 후 계재
1	2			수정 후 계재
	2	1		수정 후 계재
1	1	1		수정 후 계재
1	1		1	수정 후 계재
		3		수정 후 재심
	2		1	수정 후 재심
1		1	1	수정 후 재심
1		2		수정 후 재심
	1	1	1	수정 후 재심
	1	2		수정 후 재심
		2	1	계재 불가
			3	계재 불가
1			2	계재 불가
	1		2	계재 불가
		1	2	계재 불가

*숫자는 심사위원의 수

-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원고에 대해 해당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하며, 수정요청을 받은 투고자는 수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수정본과 심사평 반영 사항 대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의 계재 여부는 다음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초심			비고
심사자 A	심사자 B	심사자 C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세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적어도 두 명에게 '계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계재 확정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계재	계재 불가	기존 심사위원 외에 제3자 한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계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계재 확정
계재	수정 후 재심	계재 불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한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계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계재 확정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재심	계재 불가	
계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두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적어도 한 명에게 '계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계재 확정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두 명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두 명이 모두 계재 판정한 경우 계재 확정. 한 명만이 계재 판정할 경우 편집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며, 다음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재심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제3자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의뢰를 할 수 있다.

- (3) 기타 게재순서,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4) 계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 등급에 따라 일부논문은 다음호로 게재를 연기할 수 있다.

제10조 (수정 및 이의신청)

- (1)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수정한 원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계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수정여부를 확인하고, 수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 (3) 심사결과 “계재 불가”로 판정된 원고는 재심 및 재투고가 불가능하며,

해당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4)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심사에 대한 명시적인 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결과판정이 부당한 이유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종판정을 재고하고,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원고 편집)

- (1) 편집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게재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원고에 한해 발간을 위한 교정 교열 및 편집 작업을 진행한다.
- (2) 게재될 원고의 초고는 저자가 하며, 저자는 발간 전에 최종본 원고를 확인하고 원고 내용에 의도하지 않았던 변경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편집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 (원고발표)

최종 게재 원고는 '부산대 여성연구소 홈페이지(<http://mypage.pusan.ac.kr/women>), KCI, KISS에 PDF 파일 형식으로 원문을 공개하므로, 이에 대해 투고자는 동의하여야 한다.

제13조 (판권)

『여성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가 소유한다.

(제정) 2007.10.31.

(1차 개정) 2010.06.30.

(2차 개정) 2018.04.30.

(3차 개정) 2019.06.30.

(4차 개정) 2022.10.31.

(5차 개정) 2024.04.30.

『여성학연구』 원고작성요강

『여성학연구』에 발표하는 논문은 미발표된 것으로 다음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분량 및 구성〉

1. 한글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150매로 하며, 200매를 넘을 수 없다.
2. 영어 논문의 분량은 10,000단어 내외로 하며, 15,000단어를 넘을 수 없다.
3. 논문 편집 후, 30쪽을 넘는 경우 1쪽 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담한다.
4. 논문의 제목 및 저자 이름, 소속은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며 논문에는 목차, 국문초록과 국문주제어(6개 내외), 영문초록(Abstract)과 영문주제어(Key words)(6개 내외)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문요약은 한 단락으로 작성하며 300단어 내외로 한다.
5. 서평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로 한다.
6. 원고의 구성은 논문제목, 필자명, 목차,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초록, 영문주제어의 순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원고 편집 양식〉

1. 원고는 한글(1997 이후판) 프로그램 또는 MS Word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2. 원고용지는 백색의 A4용지를 세로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표, 그림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여백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위쪽: 35mm, 아래쪽: 35mm, 좌측: 30mm, 우측: 30mm.
4. 글자의 크기는 10, 장평은 95, 글자 간격(자간)은 0, 줄 간격은 160으로 하고, 글자체는 신명조를 사용한다.
5. 본문에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될 때에는 한 글자(혹은 두 칸) 뒤로 들여 쓰기를 한다.
6. 쪽 번호는 원고 하단의 중앙에 위치시키며, 줄표 없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7. 본문의 소제목은 1단계, 2단계, 3단계 순으로 1, 1), (1)로 구분하며, 더 세부적인 목적은 ①로 표기한다.

〈주석 및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인용한 문헌은 각주가 아니라 본문주에서 제시한다.
2. 본문에서의 인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구체적인 부분을 인용 또는 참고할 때 :
홍길동(1997: 127) 또는 (홍길동, 1997: 127)
 - 2) 전반적인 참고로 페이지 제시가 불필요할 때 :
홍길동(1997) 또는 (홍길동, 1997)
 - 3) 저자의 이름이 외국어인 경우 처음에만 원명을 괄호 속에 넣고, 그 이후에는 한글표기만 한다.
한글표기와 원명 모두 성(姓)만 표기한다.
예) 맥किन(MacKinnon)은 …
- 4) 인용되는 도서명이 여러 권인 경우에는 책이름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한다.

예) (홍길동, 1999; 허난설현, 2000)

- 5) 저자가 다수일 경우에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하고 4인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만 표시하고 그 외의 저자는 ‘외’ 또는 ‘et al.’로 나타낸다.

예) 허난설현 외(2001) 또는 Cornell et al.(1999)

- 6) 동명 저자의 서로 다른 연구가 본문에 포함될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출판 연도를 구별하여 표기한다. 저자의 성(姓)만 표기한 서양 문헌의 경우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저자의 성(姓) 앞에 이름의 첫 글자를 기입할 수 있다.

예) 허난설현(1992)은...

예) A. Dworkin(1997)과 R. Dworkin(1996)의 차이는...

3. 본문주에서 국내·외 문헌을 함께 인용할 때 국내문헌을 먼저 제시하고 국외문헌을 제시한다. 국내·외 문헌 모두 먼저 간행된 문헌부터 제시한다.
4.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원래의 저술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주(footnote)에서 서지사항을 제시한다.
5.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 또는 언급된 것에 한하며, 다음의 예에 따라 작성한다.
 - 1) 첫째, 국내에서 출간된 문헌(번역문헌 포함)은 저자이름의 가나다순으로 제시하고, 둘째, 국외문헌은 저자 성의 알파벳순으로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기사나 인터넷 자료를 제시한다.
 - 2) 동일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 출판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동일 저자의 문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년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 3) 저자명이 영문인 경우 성(姓)을 먼저 쓰고 심표를 찍는다. 단,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 저자명만 이 지침에 따르고 두 번째부터는 영문식으로 표기한다.

- 4) 따옴표 다음에 마침표를 찍는 경우 닫는 따옴표 안에 찍는다.
- 5) 단행본이나 잡지에 실린 논문은 맨 끝에 페이지를 명기한다.
- 6) 참고문헌의 종류에 따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단행본

- 국내문헌 -

조혜정. 1998.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문학과 지성사.

하딩, 샌드라. 2009.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조주현(역). 서울: 나남출판.

- 국외문헌 -

Andersen, Margaret L. 1988. *Thinking About Women: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ex and Gender*. N.Y. : Macmillan Pub. Comp.

(2) 정기간행물의 논문

권영자. 1988. “서비스업 여성종사자에 관한 연구.” 『여성 연구』 6(2): 5-33.

Betz, Michael and Lenahan O'Connell. 1989. “Work Orientations of Males and Females.” *Sociological Inquiry* 59(3): 318-330.

(3) 편집한 책의 논문

조옥라. 1985. “사무직 여성의 일, 사회관계, 결혼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편). 『한국여성과 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04-129.

Huber, John. 1986. “A Theory of Gender Stratification.” Laurel Richardson and Verta Taylor(eds). *Feminist Frontiers II*. N.Y.: Random House. 10-19.

(4) 학위논문

하정화. 2010. “부산 여성기자의 젠더 경험과 여성주의 실천 연구: 지역 여성주의의 가능성 모색.” 부산대학교 여성학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5) 학술대회 발표문

장명선. 2008. “적극적 조치의 합헌적 요건.” 한국젠더법학 회 ·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공동주최 제7차 한국젠더 법학회 학술대회. 『젠더법학에서의 성평등의 이론과 실제(Ⅲ)』 자료집(2008.4.12.).

(6) 신문기사·잡지

진혜민. 2019. “불꽃페미 ‘여성의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 <여성신문>. 2019.7.3.

Walker, L. A. “The Battered Woman,” *New York Times*. 23 July, 1993.

(7) 통계 자료

통계청. 2017. <가구동향조사>.

통계청.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 인터넷 자료

여성부. 2008. “여성 e news.” <http://www.mogef.go.kr>
[검색일: 2008.4.16.]

진주원. 2019. “김복동 운동가·서지현 검사, 3.8세계여성의날 수상.” <여성신문>. 2019.3.7.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566> [검색일: 2019.7.5.]

6. 이 원고작성요강에 미비된 기타 사항은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편집 위원회에서 발행한 <여성학연구> 기존 호의 관례에 따른다.

(제정) 1989.10.31.

(1차 개정) 2010.06.30. (2차 개정) 2018.04.30.

(3차 개정) 2019.06.30. (4차 개정) 2020.09.30.

『여성학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 조 (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은 부산대 여성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여성학연구』를 비롯한 연구결과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투고한 필자, 편집위원(회),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연구자의 윤리규정)

1. 간행규정 제3조(원고의 내용) 1항에 따라, 『여성학연구』에 게재하는 원고는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계획이 없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원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 (2)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 (4) 이미 다른 학술지에 발표한 자신의 연구내용을 아무런 명시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 (5)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3. 연구자는 자신의 원고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에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4.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 (2)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저자로 참여해야 하며, 연구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제 3 조 (편집위원회의 윤리규정)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 과정을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 그리고 심사위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윤리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연구윤리 위원회 소집을 요청해야 한다.

제 4 조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시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될 때까지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되, 그 근거와 이유가 편집위원회를 통해 필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윤리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연구윤리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 5 조 (연구윤리 위원회)

1.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여성학연구』 편집위원회는 즉시 5인 이상으로 연구윤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그 위원장은 편집 위원장이 겸임한다.
2.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연구부정행위로 제보된 저자에게는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4. 연구윤리 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의결한다.
5. 연구윤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 연구윤리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회의록에는 심사의 위촉내용, 심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사 대상자의 소명과 의견 청취 결과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6 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구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및 비밀 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 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 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들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보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8 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 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내용을 기초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결정하며 조치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 (1) 해당 논문을 학술지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논문을 취소한다.
- (2) 부산대 여성연구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 (3)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 (4) 해당 연구자에게 향후 5년 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제9 조 (부칙)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 2.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7.10.31.

(1차 개정) 2019.06.30.